

인민 굶주려 죽는데... “김일성이 부강번영 토대 마련”

<13면에서 계속>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우야 한다.

4)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이 당-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 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 온 주체혁명 위업-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1)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데 제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부록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일성·김정일 헌법(1972년 12월 채택, 현행헌법 2012년 4월13일, 11차 개정)

- 서문
- 제1장 정치
- 제2장 경제
- 제3장 문화
- 제4장 국방
-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제6장 국가기구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제3절 국무위원회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제5절 내각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제7장 국장, 국가, 국가, 수도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 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제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

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놓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약탈한 반공화국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핵보유국·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토로를 열어 놓으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적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

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16년 7월10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선전물이 보인다. 한-미 양국이 같은해 7월8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일성·김정일 헌법 ‘인민위천’으로 인덕 정치 찬양 일색 ‘인민이 모든 것 주인... 착취·압박서 해방’ 거짓으로 떠칠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고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에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이하 생략)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조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 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 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 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협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15면에 계속**